

#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4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3년 6월 22일  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이륜차 공회전 단속 시행 관련 시민홍보 및 일선 부서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조례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- 조례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함(안 부칙).

## 3. 참고사항: 생략

#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 “2024년 1월 1일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자동차”란 「대기환경보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 <u>다만,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.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</u>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2024년 1월 1일</u>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자동차”란 「대기환경보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 <u>다만,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.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. &lt;단서 삭제&gt;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